

# 03

## 사이버 레커로 인한 피해의 법제적 대응 방향

서보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1. 들어가며

### (1)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이버 레커

최근 사이버 레커에 의한 일명 장원영사건, 쓰양사건이라는 연예인과 유명 유튜버 대한 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레커(wrecker·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재빨리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 검증 안된 추측성 내용과 주장들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thumbnail)을 뽑아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일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차이점은, 일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고의도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사이버 레커는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빠르게 영상을 조작 또는 조합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더욱 지나친 추측성 내용과 주장들로 관심을 끌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제목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증가추세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 해킹같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장애(성능저하, 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사이버 사기와 같이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인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할 수 있으며,<sup>2)</sup> 사이버 레커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은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발생 및

1) 사이버 레커는 "고속도로 갓길 등지에 숨어 있다 짝새게 나타나서 일반 보험사 레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 '사설 레커'들의 횡포에 빚댄 말이라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 서정민 (2021. 6. 3). 사이버 레커.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3207>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URL: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검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23만 355건이 발생하였다.<sup>3)</sup> 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중 명확히 사이버 레커와 같은 범죄의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 7,446 건인데,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 382건으로 전체의 59.5%에 이른다(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이렇게 보면,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사이버 레커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sup>4)</sup>

사이버 레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제44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제44조의7제1항제2호). 이러한 제한과 함께,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3) e-나라지표 중 경찰청 자료. URL: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4)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 둘째, 정보통신망의 이용, 셋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한다. 간략하게 판례에서 정립된 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등 참조).

둘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셋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2018.11. 29. 선고 2016도14678판결 등 참조).

## (2) 기타 형사벌(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과 민사상 손해배상

### ① 모욕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나, 모욕죄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욕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갈죄의 경우 영상 비공개를 목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향력이 있는 사이버 레커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신용훼손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성립요건은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 사용, 신뢰의 훼손, 고의성이 있을 경우 신용훼손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민사상 손해배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 법원은 허위사실도 물론이거니와 “사실의 적시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또한,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미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인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sup>5)</sup>

## 3. 법적 대응의 한계

### (1)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

#### ① 유튜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

유튜브(YouTube)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그 법적 책임의 범위는 너무나 좁은 실정이다. 인도 델리(Delhi)지방법원에서는 한 의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게시물에 대해 태그라인 및 게시물의 제거,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거부하는 재판에서 유튜브는

5) 사이버 레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법 - 공갈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백수웅 변호사 블로그(Blog) 내용 참조. URL: <https://blog.naver.com/bswsz/223509402732>

“업로드된 콘텐츠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였다거나 법률 위반이라고 관할 법원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업로드된 콘텐츠에 특정 지역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 이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다든지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법적 성격을 중개자(intermediary)로 규정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가 그들의 재량과 통제 하에 해당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도 법원이 결국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여도 그 영향력은 직접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up>6)</sup>

유튜브의 개설자나 댓글은 거의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 범인을 특정할 수도 있으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유튜브의 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공개되기는 쉽지 않다. 게시 청구 방법은 처음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Google)사에 대해서 발신자 정보개시 청구서를 보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구글사가 게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국법원에 발신자 정보개시 가처분 명령을 제기하고 그 판결로 가처분 명령이 인정되면 구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IP 주소를 공개한다. 그 후, 게시된 IP주소로부터 게시자가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 가령, KT, SK브로드밴드 등 - 를 특정해 서면으로 계약자 정보개시를 요구한다. 단, 공급자는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 없지만, 형사고소, 변호사법에 따른 사실조회<sup>7)</sup>,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공급자로부터 계약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ISP에서 통신로그(통신에 사용한 IP주소, 접속일시, 계약자를 식별하는 번호 등)를 저장하고 있는 기간은 ISP에 따라 다르지만 길지 않은 편이다(일본의 경우 3개월~6개월). 이 통신로그가 삭제되어 버리면 관련 정보가 모조리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개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발신자 정보 소거 금

6) 유튜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서 최근 판례에 대해서는 이현정 (2022)의 논문 참조. 이현정 (2022).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호, pp.93-136.

7) 「변호사법」 제75조의2 사실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의 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신불가의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변호사회는 2015년 1년간 17만 6,334건에 이를 정도로 변호사조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세현 (2016. 10. 19).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정보조회 거부에 대한 변호사회의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법률신문>. URL: <https://www.lawtimes.co.kr/news/103951>

지 가처분(로그 보존 처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이미 ISP가 통신 로그를 삭제해 버린 경우에는 유튜브(구글)에 대해서 계정 정보의 개시 소송을 제기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구글 계정의 신규 작성 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개청구가 인정되면 게시자의 전화번호가 판명될 수도 있다. 전화번호를 알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명령 등 다양한 절차를 이용해 전화번호의 계약자 정보(이름·주소 등)를 조사할 수 있다.<sup>8)</sup>

## (2) 유튜브를 상대로 한 절차의 어려움(디스커버리 제도)

유튜브의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범인의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 형사 고소할 때도 신원불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특징을 사전에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미국에 특정인의 신원을 파악하여 범인의 특징을 사전에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여서 채널 운영자가 본인을 숨길 경우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화제가 된 ‘장원영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를 이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제3자인 유튜브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외국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1) 해당 정보가 외국법원에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하고, 2) 정보 제공 요구를 받는 대상이 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어야 하고, 3) 해당 정보에 대한 요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법원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① 구글이 한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② 한국법원은 일반적으로 미국법원의 사법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 개방적이며, ③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 측(원고측 회사)이 한국 법을 우회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며, ④ 익명의 개인에 대한 세부 정보에 대한 요청은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8) 일본의 경우, 웹상에서 인터넷에 의한 피해, 특히 유튜브에 의한 피해구제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변호사의 게시물이 상당하다. 위의 내용은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일본 변호사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URL: <https://atomfirm.com/sakuju/38844> 및 URL: <https://wakailaw.com/hibou/5143>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sup>9)</sup>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며,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 (3) 경미한 형벌과 과소한 손해배상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이 가운데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실제 범죄의 예방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질서에 비추어 법률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기는 하다. 특히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어, 그 범위가 높지 않으며, 유명 개인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도 특별손해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미지나 평판으로 유지되는 면이 많은 유명인에게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손해배상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9) 인터넷을 검색하면, 청구서 및 판결문 등을 찾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스타십은 이전에 법원 명령을 통해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디스커버리 신청에서 '정원영 사건' 담당 정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및 「형법」 제311조를 바탕으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URL: <https://blog.naver.com/kingbin0519/223397582391>

10) 구자윤 (2024. 8. 30). "답페이지? 호들갑 떠다'던 뽀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 [일IT템]. <파이낸셜뉴스>. URL: <https://www.fnnews.com/news/202408292315206504>

이렇듯, 첫 단추부터 가해자의 특징이라는 어려운 단계를 뚫고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확정되어도, 그 결과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데 불과하고, 어려운 과정과 긴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금액은 피해에 비해서 낮은 금액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이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된 것은 정보통신망의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피해가 심각하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약한 것은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이 있다.

#### 4. 지속되는 사이버 레커에 의한 피해 대응방안

##### (1) 사이버 레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2024년 7월 22일 김현정 의원 등 11인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 사이버 레커와 함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안 제 311조의2 신설)하고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sup>11)</sup>



이 밖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특히 포털·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삭제요구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이 법률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sup>12)</sup> 또한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우,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도 있었다. 최근에는 2024년 7월 26일 사이버 레커 방지법 입법청원(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sup>13)</sup>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이 청원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범죄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일체의 수익 및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지도 담고 있다.<sup>14)</sup>

12)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2Q0E4O2C7R1E8R2I64Q4C2Y5E6](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2Q0E4O2C7R1E8R2I64Q4C2Y5E6)

13) 입법청원 참조. URL: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

14)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서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논리에서 다루어진 논문이기는 하나, 이 창규(2012)의 논문은 이번 건과 같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그 적용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창규 (2012). 사이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가천법학>, Vol.5, No.3, 통권 13호, pp.163-204.

## (2) 정보통신망법상 몰수 추정 규정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 및 제73조 제7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는 제72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몰수, 추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본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검찰총장이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 반복적 악의적이라면 구속 수사 지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특정된다면 몰수 추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원영과 기획사인 스타쉽엔터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판결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금액은 소송비용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유명인의 손해를 감안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고민하여 입법부의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유도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20년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X(옛 트위터)의 5개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요청'을 시작하였고, 매년 시정요청 건수 중 평균 85% 이상의 해외 불법·유해정보가 삭제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총 137,594건을 시정요청 하였으며, 이 중 123,422건이 삭제 또는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5)</sup> 방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튜브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한국판 유튜브는 정책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동법 제22조의5를 위반하는 불법 사진 및 동영상, 가짜 이미지 및 동영상, 아동 및 청소년 성적 학대 콘텐츠와 같은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를 유튜브가 제공하는 기타 신고옵션에서 법률 웹 양식으로 신고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구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지역에서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어 명예훼손적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이버 레커에 의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방안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조정대상 판단과 조정실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보고서」를 마련하여 2022년 8월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 등을 언론 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 2019년 4건인 유튜브 채널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35건, 2024년 7월 기준으로 이미 19건이나 된다. 그것도 이 숫자가 피신청인을 단독으로 유튜브에 한정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정신청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중위의 조정대상 판단 중 유보된 형태인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해당

<sup>15)</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pp.221-222.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에 대한 조정은 미확정인 상태에서, 언론의 형태를 가지고 뉴스의 보도라는 형식으로 사이버 레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조정 대상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10과 같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심의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sup>16)</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형태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며, 타인을 훼손시키면서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술에까지 접목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더욱 그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미래의 변화에 맞게 선제적으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